

의안번호	2217017
의 퇴 인	민병덕의원
회 답 일	2026.9.11.
추 계 번호	26D1032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보훈문화실태조사 실시,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9억 5,000만원, 2032년 50억 4,7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262억 500만원(연평균 52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보훈문화실태조사 (안 제8조)	937	0	0	995	0	1,932	386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운영 (안 제14조)	5,013	4,587	4,736	4,889	5,047	24,273	4,855
합계	5,950	4,587	4,736	5,884	5,047	26,205	5,241

주: 1.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기본계획)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 (보훈문화실태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보훈문화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9조 (보훈문화 국제교류의 촉진)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10조 (보훈문화확산기관의 지정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보훈문화를 진흥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보훈문화확산기관(이하 “확산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확산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문화의 진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그 밖에 확산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5	안 제12조 (보훈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보훈 문화 진흥원	안 제14조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등)	보훈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안 제16조 (진흥원의 업무)	진흥원은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보 급,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보훈문화진흥 정책의 연구개발 및 조 사, 국내외 연구교류협력 및 보훈문화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민간기관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및 행사 지원, 학교와 확산기관, 보훈기념행사, 보훈문 화공간 등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업무, 보훈문화콘 텐츠미디어센터의 구축·관리, 제1호부터 제8호까 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을 수행 함(제1항)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 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안 제17조 (임원 및 직원)	진흥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제1항)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함(제3항)	
		안 제19조 (진흥원의 재원)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20조 에 따른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재원 으로 설립·운영함(제1항)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안 제20조 (기부금품의 접수)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 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23조 (보훈기념행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제 1항)	재량규정
8	안 제24조 (보훈의 달 사업)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5조제2항 에 따른 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 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 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25조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보훈 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보훈 문화 교육	안 제27조 (학교의 보훈문화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보훈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보훈문화교육에 관한 체험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안 제29조 (교원의 연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초·중등학교의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보훈문화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안 제30조 (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문화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보훈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안 제31조 (사회의 보훈문화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보훈문화교육 관련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보훈문화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보훈문화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기본계획)	-	- 미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수행중인 보훈정책개발 사업 예산(2026년 기준 10억 3,700만원)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8조 (보훈문화실태조사)	○	-																							
3	안 제9조 (보훈문화 국제교류의 촉진)	-	- 미첨부 -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훈 관련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라 보훈문화 국제교류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기 추진 국제교류사업은 다음과 같음 <table><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h>2026 예산(백만원)</th></tr><tr><td rowspan="2">독립유공자 자료 수집관리</td><td>독립운동사료수집</td><td>520</td></tr><tr><td>유엔참전용사 재방한</td><td>2,303</td></tr><tr><td rowspan="3">국제보훈 교류협력</td><td>현지참전기념사업</td><td>1,121</td></tr><tr><td>참전국후손사업</td><td>2,387</td></tr><tr><td>교류활성화 등</td><td>1,378</td></tr><tr><td>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td><td>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국제 교류활동</td><td>285</td></tr><tr><td rowspan="2">독립운동 관련사업 등지원</td><td>국의 독립기념사업지원</td><td>378</td></tr><tr><td>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초청</td><td>274</td></tr></table>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 예산(백만원)	독립유공자 자료 수집관리	독립운동사료수집	520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2,303	국제보훈 교류협력	현지참전기념사업	1,121	참전국후손사업	2,387	교류활성화 등	1,378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국제 교류활동	285	독립운동 관련사업 등지원	국의 독립기념사업지원	378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초청	274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 예산(백만원)																								
독립유공자 자료 수집관리	독립운동사료수집	520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2,303																								
국제보훈 교류협력	현지참전기념사업	1,121																								
	참전국후손사업	2,387																								
	교류활성화 등	1,378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국제 교류활동	285																								
독립운동 관련사업 등지원	국의 독립기념사업지원	378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초청	274																								
4	안 제10조 (보훈문화확산기관의 지정 등)	-	- 미첨부 - 보훈교육연구원, 독립기념관, 민간기념관 등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가능한 기관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라 보훈문화확산기관 지정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기 추진 보훈문화확산 기관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 예산(백만원)
				보훈문화 조성	보훈교육연구원 지원 보훈문화 체험활동	4,377 1,090
				기념관 관 리운영	국가관리 기념관 위탁 운영	8,611
				현충시 설 관리	현충시설 개보수 및 활 성화 지원	2,152
				독립기념 관 운영 및 활성화	—	30,496
				합계	—	45,737
5	안 제12조 (보훈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	— 미첨부 — 기존의 연수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및 규모(해설사, 보훈문화콘텐츠 제작인력 등)의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기 추진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다음과 같음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 예산(백만원)
				보훈교육 연구원	연수교육 교원 사이버 강의	1,842 100
				합계	—	1,942
6	보훈 문화 진흥원	안 제14조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등) 안 제16조 (진흥원의 업무) 안 제17조 (임원 및 직원) 안 제19조 (진흥원의 재원) 안 제20조 (기부금품의 접수)	○	—		
7	안 제23조 (보훈기념행사)		—	— 미대상 —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참고로 기 추진 보훈기념행사 사업은 다음과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 예산(백만원)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일행사	3,067
					민간단체 행사지원	816
				참전기념행사	정부주관 참전기념행사	1,137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	1,134
				독립운동 관련 사업등 지원	국외독립행사지원	378
				참전기념 사업지원	공법단체주관 참전기념사업	597
					민간단체주관 참전기념행사	1,25
				합계	—	7,129
8	안 제24조 (보훈의 달 사업)		—	— 미대상 —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참고로 기 추진 보훈의 달 사업은 다음과 같음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 예산(백만원)
				호국보훈의달 행사	호국보훈의달 홍보	295
					모범 국가보훈대상장 등 포상	49
					소속기관 행사	486
					보훈의 상징 달기 사업	75
					기타 호국보훈의달 사업 추진	103
				합계	—	1,008
9	안 제25조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		—	— 미대상 —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참고로 기 추진 보훈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다음과 같음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 예산(백만원)
				현충시설 관리	현충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지원	2,152
					국회현충시설 보존관리	7,770
				기념관관리운영	국가관리기념관 위탁운영	8,411
				독립기념관 운영 활성화	독립기념관 운영경비 활성화 사업원비 지원	30,496
				합계	—	48,829
10	보훈 문화 교육	안 제27조 (학교의 보훈문화교육)	—	— 미대상 —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참고로 기 추진 보훈문화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음		
		안 제29조 (교원의 연수 등)				
		안 제30조 (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문화교육)				
		안 제31조 (사회의 보훈문화교육)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 예산(백만원)
				보훈문화조성	보훈문화 체험활동	1,090
					보훈문화 교재 및 프로그램	1,866
					보훈정신계승 연수 교육	2,658
				합계	—	5,614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제8조에서 보훈문화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
 - 국가보훈부는 2022년 보훈문화실태조사 시험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2022년 1,710가구를 대상으로 1회 실시되었으며, 당시 예산은 1억 6,200만원임
 - 제정안에 따라 추진될 보훈문화실태조사는 국가보훈부의 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함
- 제정안 부칙 제3조에서 보훈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교육연구원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추가재정소요는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진흥원의 증원인력(진흥원 필요 인력에서 現 보훈교육연구원 인력을 차감)을 기준으로 추정함
- 본 추계에서 제정안의 진흥원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진흥원의 규모와 업무 측면에서 유사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¹⁾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을 추계함
 - 그 외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무공간 재배치 면적에 2025년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입주공사비를 적용하여 추정함
 - 現 보훈교육연구원의 건물 연면적(10,782㎡)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 진흥원의 건물 신축·증축은 고려하지 않음
 -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면적(913㎡)에 2025년 기준 이민정책연구원의 입주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
 - 진흥원의 사업수행 관련 구체적 계획의 부재로 사업비는 추계에서 제외함
- 제정안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단가는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임금상승률 3.0%, 소비자물가상승률²⁾,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교원의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충,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으로 진흥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하되 연구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임직원수는 151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2) 소비자물가상승률(2025.7.)

득비(공공기관)³⁾를 각각 적용함

- 제정안은 진흥원의 재원으로 안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이나 그박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익사업 계획 부재로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훈문화실태조사(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실태조사를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국가데이터처의 「2027년 회계연도 통계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보훈문화실태조사 예산

구분	주요내용	예산(백만원)
통계조사 기획	표본설계	253
통계조사 준비	조사원 교육, 조사표 및 조사용품 마련	245
자료수집	현장조사, 조사표 내검 및 입력	382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자료처리 및 결과보고서 발간	39
합계		919

자료: 국가보훈부

- 제정안에 따라 보훈문화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실태조사예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2025.7.)

(단위: 천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공공기관	7,271	7,417	7,565	7,716	7,8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 보훈문화실태조사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실태조사	937	0	0	995	0	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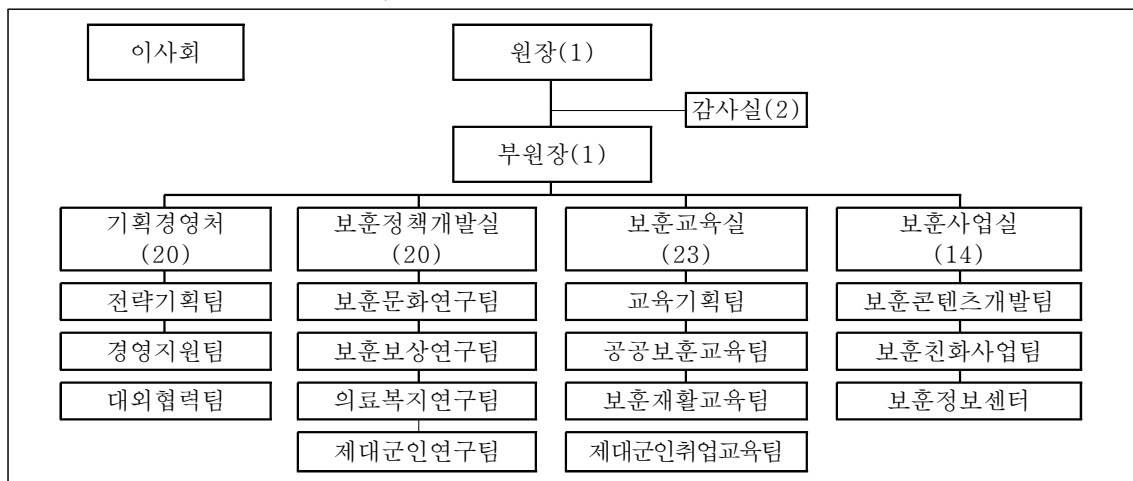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운영(안 제14조)

- 인건비는 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의 정원에서 現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소속기구인 “보훈교육연구원”의 정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증원 인력에 대하여 유사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의 정원(안)과 조직도(안)는 다음과 같음
 - 진흥원의 정원은 81명이고, 상임임원이 1명, 일반정규직이 72명, 무기계약직이 8명임
 - － 상임임원(1명): 원장
 - － 일반정규직(72명): 연구직(43)·전문직(12)·행정직(12)⁴⁾·시설관리직(5) 인력
 - － 무기계약직(8명): 업무지원직 인력

[그림 1] 보훈문화진흥원 조직도(안)



주: 상기 정원(안)과 조직도(안)은 잠정적인 구상안이며, 향후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4) 감사실 인력 2명을 포함한 수치임

-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설조직인 보훈교육연구원의 정원은 37명이고, 원장(별정직) 1명을 포함한 일반정규직 직원이 29명, 무기계약직 직원이 8명임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진흥원의 증원 인력 인원수는 임원 1명, 일반정규직 직원 43명 등 총 44명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음

[표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임직원 현황 및 평균연봉(2025)

(단위: 명, 천원)

구분	상임임원(기관장)		직원(정규직)	
	인원	평균연봉	인원	평균연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141,398	151	59,844

주: 2025년 결산 기준 평균 연봉액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진흥원의 설립에 따라 증원인력 44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기본경비는 아래 표와 같음
- (보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임직원 평균 연봉에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
 - (기관부담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금 요율⁵⁾을 적용하여 추정
 - (자산취득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
 - (기본경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37.0%⁶⁾를 적용하여 산정함

5)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금 요율(2026.7.)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기관부담금 요율(%)	12.064	12.405	12.749	13.095	13.4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6)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인건비는 81억 3,500만원, 기본경비는 30억 1,100만원임

[표 5] 보훈문화진흥원 인건비등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인건비	2,981	3,070	3,162	3,257	3,355	15,826
기관부담금	360	381	403	427	451	2,021
자산취득비	320	0	0	0	0	320
기본경비	1,103	1,136	1,170	1,206	1,242	5,857
합계	4,764	4,587	4,736	4,889	5,047	24,02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무실 리모델링 면적에 2025년 법무부 소관 예산에 편성된 이민정책연구원의 입주공사비 단가와 최근 10년간 건설공사비 연평균 증가율 4.9%를 적용하여 추계함
 -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이 913㎡이므로, 별도의 신축·증축 없이 리모델링(입주공사)을 통해 사무공간을 재배치한다고 가정
 - 진흥원의 사무공간 재배치에 필요한 리모델링(입주공사) 면적은 913㎡⁷⁾에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의 2025년 입주공사비 단가(236.3천원/㎡)와 최근 10년간 건설공사비 연평균 증가율 2.9%를 곱하여 산정
- 제정안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다음과 같음

[표 6]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2028년

구분	리모델링 면적(A, ㎡)	단가(B, 천원/㎡)	합계(C=A×B)
리모델링 공사비	913	272.7	24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42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7) 진흥원 전체 정원 81명이 근무할 면적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66㎡(원장), 50㎡(부원장), 33㎡(부서장), 17㎡(팀장), 7㎡(직원) 적용

[표 7]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보훈문화 진흥원 설립·운영	인건비등	4,764	4,587	4,736	4,889	5,047	24,024	4,805
	리모델링	246	0	0	0	0	249	50
	합계	5,013	4,587	4,736	4,889	5,047	24,273	4,855

주: 1. 본 추계는 국가보훈부의 의견과 유사 공공기관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보훈문화실태조사 실시,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9억 5,000만원, 2032년 50억 4,7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262억 500만원(연평균 52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보훈문화실태조사	937	0	0	995	0	1,932	386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운영	5,013	4,587	4,736	4,889	5,047	24,273	4,855
합계	5,950	4,587	4,736	5,884	5,047	26,205	5,241

주: 1.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가보훈부의 의견과 유사 공공기관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의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정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